

예산총칙

제 1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| 회계별 | 예산총액 | 전년도예산총액 | 증감(△)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총 계 | 1,779,524 | 1,823,384 | △43,860 | 53,385 |
| 일반회계 | 1,779,524 | 1,823,384 | △43,860 | 53,385 |

제 2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·세출과 같다.

제 3조 세입예산은 해당 관·항·목의 예산을 초과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, 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조치한다.

제 4조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수입되는 국고, 자치단체보조금, 기타보조금, 지정후원금, 사업수익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5조 예산 집행은 <2023년 여가부지침>에 따른다.